

등록번호	노인장애인과-167	주무관	장애인지원 팀장	노인장애인 과장	복지국장	부시장	시장
등록일자	2026. 1. 2.						2026. 1. 2.
결재일자	2026. 1. 2.						
공개구분	부분공개(5)	오병수	김정미	강승필	서미경	민기식	변광용
		협조자 예산실장 신현숙 예산팀장 김성균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시행계획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연중)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유형별 지원시간 차등 지원)
- 예 산 액: 619,491천원(시비100%)
- 사 업 량: 74명
-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 제공기관: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시장래인부모회,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거제시지회, 거제시장래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변경사항
 - 단가 인상: 2025년 16,620원 → 2026년 17,270원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반영
- 향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사업 지원대상자 일제 조사 : 4월말 까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시행계획

국·도비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이용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I | 현 황

○ 서비스 대상 현황

(2025. 12. 31. 기준, 단위 : 시간, 명)

구분	계	이용시간							비고
		20	30	40	50	60	70	80	
인원	74	2	6	45	2	8	11	-	자격취득자

○ 이용인원 및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2023년		2024년		2025년(~11월)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68	476,992	68	453,650	74	434,907	·25년 12월분 : 미포함 (26년 1월중 정산예정) ·자격취득자 중 실제 서비스 이용인원

II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 하교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

-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동일(4개소, 방문목욕 제외)
 - ※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시장래인자립생활지원센터,
 - 거제시장래인부모회,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거제시지회
- 서비스 제공시간: 가구특성별, 사회활동참여 유형별 기준에 따름
- 사 업 량: 자격유지자 74명(2025. 12. 31. 기준)
- 서비스내용
 -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식사도움, 실내이동
 -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예 산 액 : 619,491천원(시비100%)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바우처사업비): 615,121천원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위탁업무비(사회보장정보원): 4,370천원

III | 지원 내용

- 2026년 시추가 지원사업 지원액 및 서비스 지원 단가
 - 월 한도액 산정 : 가구특성별, 유형별 사유에 따라 차등지원

구 분 (지원시간: 평일기준)	지원액 (단위: 원)	서비스 지원 단가 (시간당)	비고
20시간	345,400	(평일) 17,270원 (주간 및 심야) 25,905원	※ 주간 및 심야단가 적용기준 · 22시 이후~6시 이전 심야 서비스 제공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 지원시간 산정기준 · 가구특성별, 사회활동 참여 유형별 사유 중 유리한 조건(1개 사유) 단일선택 이용가능
30시간	518,100		
40시간	690,800		
50시간	863,500		
60시간	1,036,200		
70시간	1,208,900		
80시간	1,381,600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단가 준용

※ 본인부담금 : 없음

【참고사항】

● 2026년 국·도비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 지원금액: 평일 시간당 17,270원, 가산단가 25,905원

* 인건비는 시간당 단가의 75% 이상, 그 외는 기관운영비로 사용

* 인건비: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

* 기관운영비: 활동지원사 퇴직금, 4대 보험료, 법정수당 등 포함

● 2025년 국·도비 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 평일 16,620원, 가산 24,930원

IV 세 부 추 진 사 항

○ 결제방식

- 바우처 결제: 시에서 결정한 지원량에 따라 이용자에게 바우처가 생성, 서비스 제공 후 실시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함
- 예외지급 : 카드 발급 지연·분실 등의 사유로 정상결제 불가 시 전자 바우처 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하여 예탁금에서 지급

○ 서비스 제공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독거 및 준독거)을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상 월 제공시간 한도를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시 추가사업 이용 불가, 단 와상·사지마비 등 활동에 제한이 심하거나, 발달장애인 경우 가정 방문 등 현장 확인을 통해 이용 가능

※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의 부재, 독거 및 준독거에 해당되는 와상 장애인 및 (심한)발달장애인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 이용 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에 시 추가 시간 이용 가능

- 지원기준 : 가구특성별, 사회활동참여 유형별 사유에 따라 차등 지원

(월 최소 345,400원 ~ 최대 1,381,600원)

- 당월 미사용분 익월로 이월하여 사용 불가
-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결제 가능
(단, 독거(와상)장애인 및 심한 발달장애인에 한하여 예외적용 가능)

○ 업무처리절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급여비용 지급: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장애인활동 시 추가지원 급여비용 지급
(바우처결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 받은 금액 내에서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함)
-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를 제공기관에 집행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집행내역을 시에 통지
- 예외지급 : 당월 바우처 미결제분에 대해 제공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청구 → 시는 신청사항 검토 후 승인 → 예탁금에서 지급

○ 서비스 종료

- 종료 시기
 -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이용자의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부정 수급한 경우(부정수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 제한)
- 종료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지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즉시 이용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
 - 이용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 해지에 대해 통지

○ 제공기관 감독

- 서비스 질 저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점검 시 동시 점검
- 부정사례 적발 시 조치는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지침 준용

V

향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 일제조사
: 4월말 까지
⇒ 조사결과 활용 수급자격 및 급여시간 변경 등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사업 위탁업무비 지급(한국사회보장정보원)
: 2026. 1. 20.일 한

- 붙임 1. 시 추가사업 제공시간 산정 기준 1부.
2. 시 추가사업 관련 서식 각 1부. 끝